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9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7. 13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1999. 7. 13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1999. 7. 21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0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를 정비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0 고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개정 : △57명(안 제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0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정비함에 따라 정원감축에 따른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키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0 문 : 정원 57명 감축방안은

- 답 : 1999년 22명, 2000년 13명, 2001년 22명, 년차별 정원 감축계획이며, 자연감소 등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추진할 계획임.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9. 7.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